

# 조 세 제 도

2007. 4. 9

## 가. 개 요

- 업종별 세금종류가 다양하며, 하이테크 산업, 일반 외상투자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나 개인의 기술 양도, 개발, 자문, 서비스별로 세금의 종류, 세율, 감면혜택이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업종의 세율 및 투자지역의 우대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과세대상은 외국인 투자기업(합자, 합작, 단독투자)과 외국기업(주재원사무소, 외국은행 지점, 6개월 초과 건설도급공사 및 기술용역제공 장소 등)임

## 나. 기업소득세

- 내·외자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구 분	종 전	개 정
기업소득세율	-내자기업 : 33%(지방세 3% 포함) -외자기업 ·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보세구, 수출가공구 : 15% · 연해지역 경제개발구, 공업원 등 : 24%	-내·외자기업 소득세 단일화 : 25% · 영세기업 : 20% · 하이테크 기업 : 15%
우대제도	-생산성 외자기업 <sup>1)</sup> 의 2免3減 -수출형 외자기업 <sup>2)</sup> 의 2免3減 <sup>3)</sup> 종료이후 50% 감면	폐 지

- 동법 공포(2007. 3. 19)전에 설립된 기업은 기존 우대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고 동법 시행후 5년내에 점진적으로 과도기를 거쳐 동법 규정의 세율을 적용받음
- 우대 혜택을 아직 향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우대기한은 시행일 (2008. 1. 1)부터 기산함.

- 산업별 우대 위주, 지역별 우대 보조

- 영세기업은 20%, 하이테크 기업은 15%의 우대세율 적용
- 경제특구, 상하이푸동신구내 신설 하이테크기업, 서부대개발지역에 진출한 장려기업은 우대조치 유지

- 
- 1)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2)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3) 이익발생년도부터 기산하여 2년동안 면세, 3년동안 50% 감면하는 제도

○ 기업소득세가 감면되는 산업

- 농림목어업(農林牧漁業)
-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항구, 비행장, 도로, 전력)
- 환경보호, 에너지 수자원 절약
-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
- 국가가 정한 장려업종

○ 민족자치지구는 그 지방에 투자한 기업의 기업소득세중 지방세 일부를 감면 혹은 면제 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감면정책에서 간접적인 우대정책으로 전환

○ 기업소득세 계산시 면세수입 대상

- 국채이자 수입
- 거주자 기업<sup>4)</sup>간의 주식배당금, 순이익 등 투자수익
- 중국 경내에 설립된 비거주자 기업<sup>5)</sup>이 거주자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기구와 실제 관계가 있는 주식 배당금, 순이익 등 투자수익
- 비영리 조직 수입

○ 기업소득세 계산시 납세소득액에서 공제되는 지출항목

-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 연구개발비용
- 장애인 고용 및 국가가 장려하여 고용한 기타 취업인원이 지불한 임금

○ 창업투자기업이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창업투자에 종사할 경우, 투자액의 비율에 따라 납세 소득액 공제

○ 고정자산 감가상각 년한 단축 혹은 감가상각 가속상각

○ 기업이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입은 납세소득액 계산시 차감 계산

○ 환경보호, 에너지/물 절약, 안전생산 등의 전용설비 투자액 세액 공제

- 과세대상소득

- 제조업 : 매출이익 + 기타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지출
- 매출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세액 - (판매비 + 관리비 + 재무비용)

4) 거주자 기업 : 중국내에 설립된 기업 혹은 외국(지구)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내에 있는 기업

5) 비거주자 기업 : 외국(지구)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내에 있지 않은 기업. 단 중국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중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기업

- 서비스업 : 영업 순수입 + 영업외수입 - 영업외지출
  - 영업순수입 = 영업총수입 - (영업수입세액 + 영업비용 + 관리비 + 재무비용)
- 내외자기업의 세금공제항목 통일
  - 세전 공제항목인 고정자산, 임금, 대손충당금, 사회공익기금, R&D비용, 광고비, 업무추진비, 투자수익 등에 대한 공제금액을 통일('07년 하반기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상 항목별 공제비율 등 명시 예정)

다. 기타 조세

(1) 증치세(부가가치세)

- 중국은 수출 호조기에는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인하하고, 수출 부진기에는 인상함으로써 무역수지를 조정하여 왔음.
- 도입기(1985~93년) 및 100% 환급 → 환급율 인하기 (1994~97년) → 인상기(1998~2003년) → 인하기 및 환급대상품목 축소(2004년이후 → 현재)
- 무역수지 흑자 억제, 산업 및 수출구조 고도화를 위해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조정 (환급율 취소 255개, 환급율 인하 1,130개, 환급율 인상 191개 품목)

<표 18> 증치세 환급율 조정의 주요내용 ('06. 9. 15)

조정전	조정후	품 목
2%~13%	0%	석탄, 천연가스, 파라핀, 아스팔트, 규소, 비소, 석재, 비철금속 및 스크랩 등
5%~13%		금속 도기, 농약 및 중간체(25종), 건전지, 수은전지 등
		양모, 목탄, 칩목, 코르크제품, 일부 목재 초급제품 등
11%	8%	강재(142개 세 번)
13%	8%, 11%	도기, 일부 가죽 완제품, 시멘트, 유리
13%	5%, 8%, 11%	일부 비철금속 재료
13%	11%	섬유제품, 가구, 플라스틱, 라이터, 일부 목제품
17%	13%	비기계 구동차 및 부품
13%	17%	중요 기술장비, 일부 IT제품, 바이오 의약품 및 첨단기술제품
5%	11%, 13%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

### 관할지역 상이에 따른 관세 및 증치세 환급 곤란

- A사는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협력업체가 입주한 천진의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이용 비용 및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천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하북성 량방 개발구에 법인 설립
- A사가 공장을 완공하고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협력업체인 천진 공장에 제품 납품을 시도하였음. 협력업체는 생산제품을 대부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로컬 수출로 인정되어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했던 원자재의 관세와 증치세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할 당국에서 환급해주지 않았음. 관세와 증치세 부담으로 협력업체에 높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는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제품 사용에 난색
-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하북성 세관과 세무당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시 천진 세관 및 세무당국에서 천진 협력업체가 A사가 제공한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관계당국은 천진 협력업체가 A사가 납품한 제품을 수출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로 증치세 환급 불가 통보

#### (2) 영업세

- 과세 대상 : 중국 내 서비스(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등)제공자와 토지사용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자 및 건축물, 토지부속물 판매자
- 세액 계산 : 영업수입(매출액) × 세율이며, 각 업종별로 세율을 달리함
  - 교통운수, 건설, 우편통신, 문화 체육업 : 3%
  - 서비스(호텔, 요식, 창고, 임대, 광고 등), 무형자산양도, 부동산판매 : 5%
  - 금융보험 : 5%
  - 오락, 유흥업(노래방, 골프장, 볼링장, 무도장 등) : 5~20%(각 성시별로 다름)

#### (3) 소비세

- 과세대상 품목 : 담배(30~50%), 주류(5~25%), 화장품(30%), 귀금속(10%), 자동차(3~8%) 등 11개이며, 품목에 따라 3~50%의 다양한 세율 적용
  - 다만, 당해 소비품을 별도의 소비품 생산에 사용하거나 과세 소비품을 수출할 경우 비과세

#### (4) 배당금, 이자, 로열티

- 자회사로부터 해외 모기업에 대한 배당시 20% 원천 징수
  -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B주 배당금에 대해서는 면제
    - 우리나라와 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10%의 배당세만 부과
- 해외로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20%의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
  - 국제금융기관이 중국정부 및 국유은행(state banks)에 융자하거나 외국은행이 우대금리로 중국

국유은행에 용자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면제

- 우리나라와 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10%의 이자소득세만 부과하며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중국 현지 기업에 용자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면제
- 해외로 지급되는 로열티 및 수수료에 대해 20%의 소득세 원천 징수
  - 농림축산, 과학연구, 에너지개발, 교통사업 등 중요기술개발에 제공된 로열티는 10%로 경감되며, 이중 선진기술 관련 로열티는 면제
  -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10%의 로열티세만 부과
- 중국은 다수의 국가와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원래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20% 원천징수하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개 10%로 경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해 모두 10%로 한다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상태

(5) 기타(인지세, 방산세, 토지사용세, 자원세, 자본세 등)

- 인지세 : 모든 계약, 공증, 정부인허가 신청시 적용되며, 세율은 0.005~0.1%로 다양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 0.005%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0.1%
  - 구입·판매계약서, 건축공사 청부계약서, 기술계약서 : 0.03%
- 방산세(부동산세) : 부동산 소유 또는 임차에 대한 세금(소유:1.2%, 임차:12%)
- 토지 사용세 :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면적당 부과
  - 대도시(비농업 인구 50만이상) : 0.5위안~10위안/m<sup>2</sup>
  - 중도시(비농업 인구 20만~50만) : 0.4위안~8위안/m<sup>2</sup>
  - 소도시(비농업 인구 20만이하) : 0.3위안~6위안/m<sup>2</sup>
  - 현성, 건제진, 공광구 : 0.2위안~4위안/m<sup>2</sup>
- 자원세 : 외국인투자기업의 광산물 채굴시 적용되며, 채굴조건에 따라 세금 별도 부과
  - 원유 : 8~30위안/톤
  - 천연가스 : 2~15위안/톤
  - 석탄 : 0.3~5위안/톤
  - 기타 비금속광물 : 0.5~20위안/톤 등
- 차량·선박세 :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선박 : 적재중량에 따라 0.6~5위안
  - 차량 : 크기에 따라 1.2~320위안